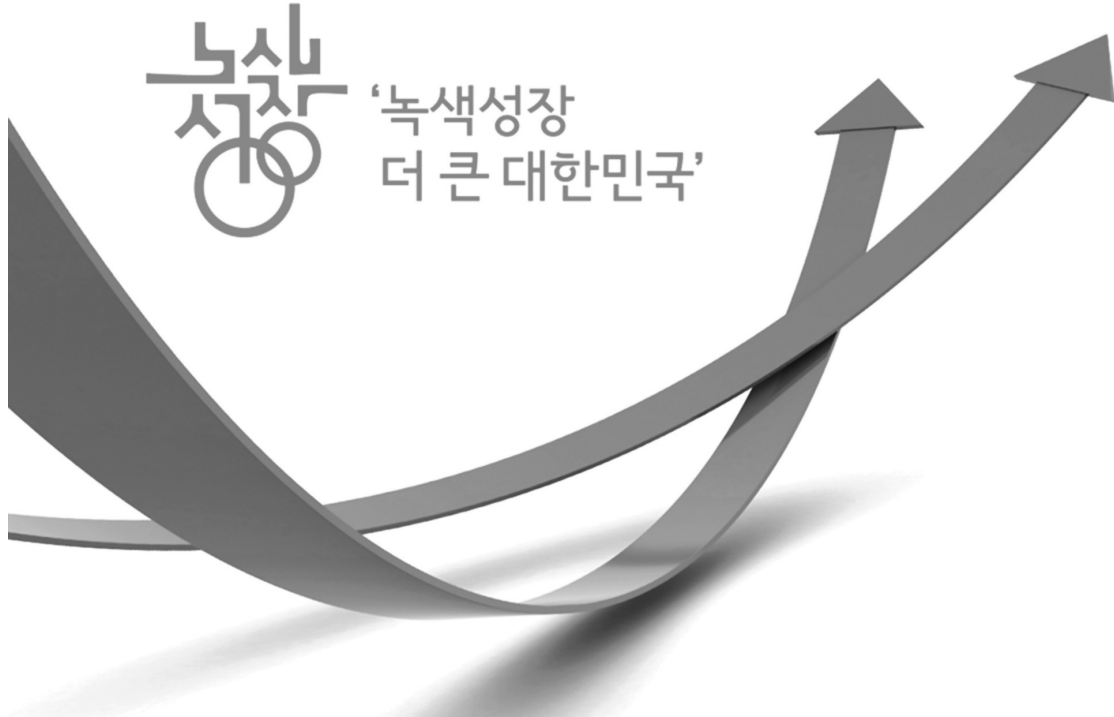


녹색건축물 효율화 정책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추이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기업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있다.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효율 설비 등 시설 투자는 물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지난 4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 △녹색건축물 관련법 및 정책 추진방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 △녹색건축·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녹색건축물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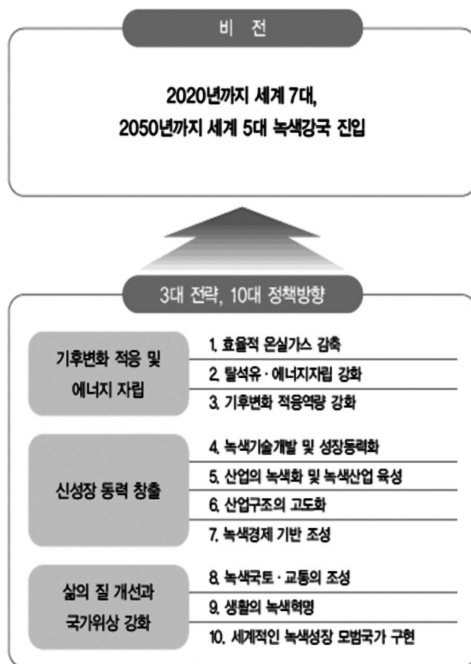
본지는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주]

녹색건축물 효율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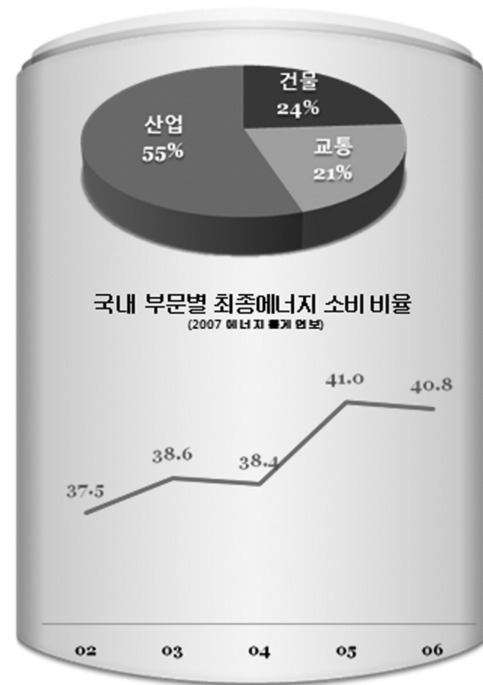
지구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의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집중함은 물론, 기후변화 협약 채택 등 전세계적인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1992년, 유엔은 지난 100년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연평균 기온이 0.74℃ 상승해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는 등 선진국의 탄소감축 의무를 정했다.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6위인 우리나라 역시 탄소 의무감축 대상국 가입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향후 제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세계 7대, 2050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10대 정책방향 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과제는 탄소배출량 규제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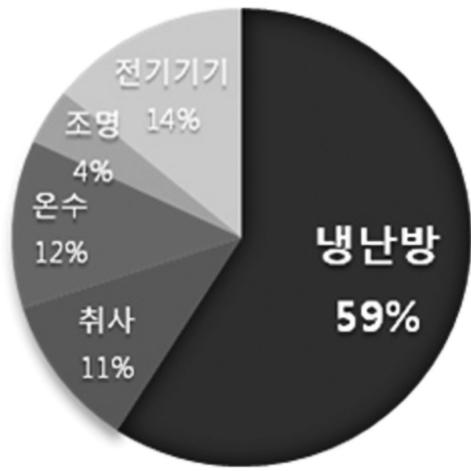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산업 및 교통과 함께 온실가스를 최다로 배출하고 있다. 건축물 부문은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인구밀집 및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 전체 건축물 부문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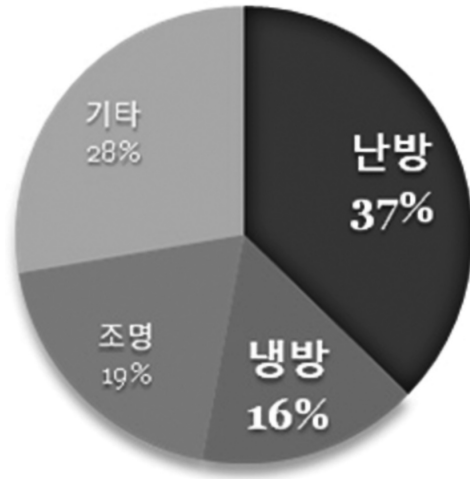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 국내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가정용



▲공업·상업용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비율

건축물 에너지 소비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축물의 쾌적성, 편리성을 위해 연 평균 2.1%씩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2006년 대비 1.5배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분포는 가정용의 경우 전기기기 14%, 조명 4%, 온수 12%, 취사 11%, 냉난방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상업용의 경우 조명 19%, 냉방 16%, 난방 37%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특히 냉난방 관련 효율화가 절실하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정부의 녹색건축물 효율화 정책

지난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발표 후 정부는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녹색 선진국가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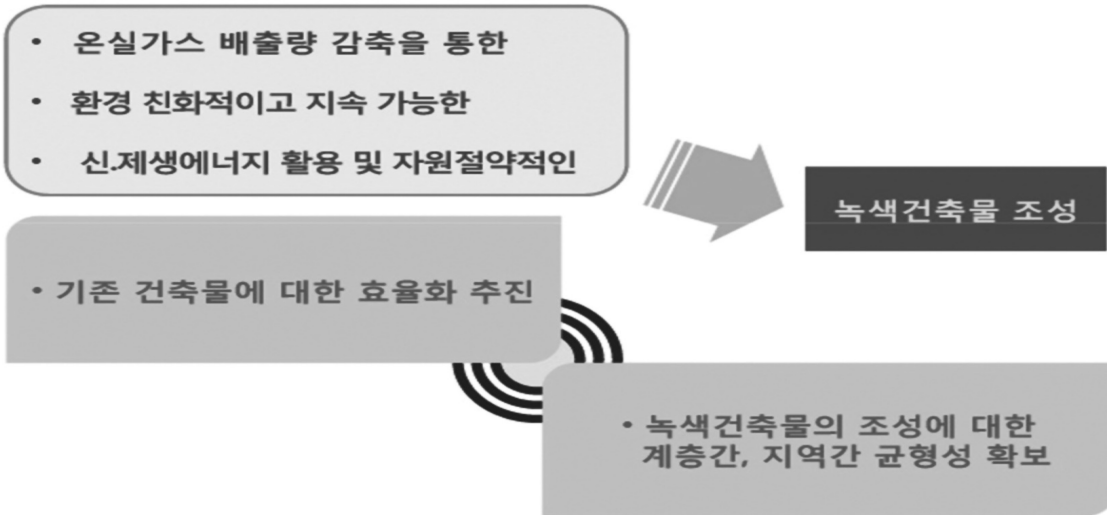
량을 2005년 대비 31% 감축 목표로 삼았다. 이에따라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촉진 등 건축물 에너지 절약 유도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뿐만 아니라 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도 구상됐다.

이어서 지난 2011년 정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재활용 등 건축 단계별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통한 전생애 과정에서 녹색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목표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나눠 설계·시공기준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인증제 등을 통한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과제는 앞으로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올해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



1. 제정 목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코자 제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다. 또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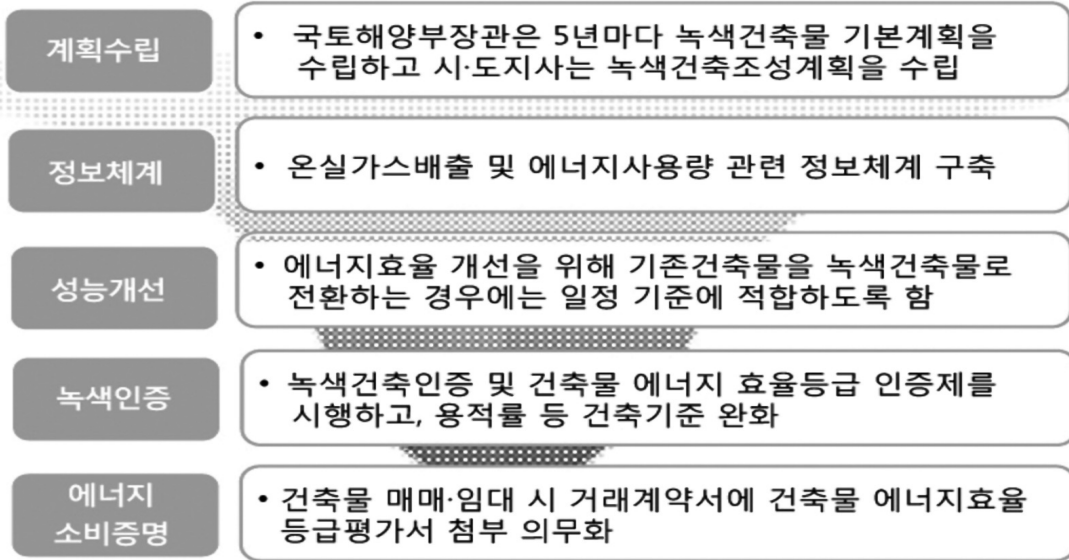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다. 따라서 녹색건축물의 정의와 기본원칙,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수립 등이 담겼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5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2. 주요 구성 요소



■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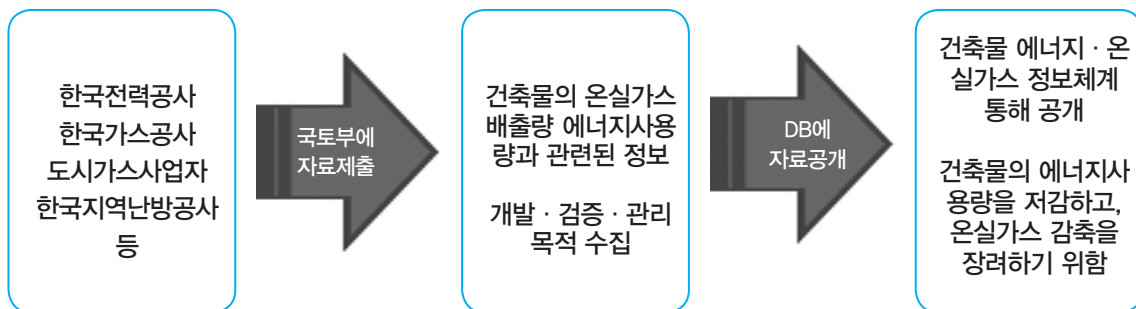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제6조 및 7조).

*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달성 목표 설정,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육성 및 조성사업 지원 등

■ 정보체계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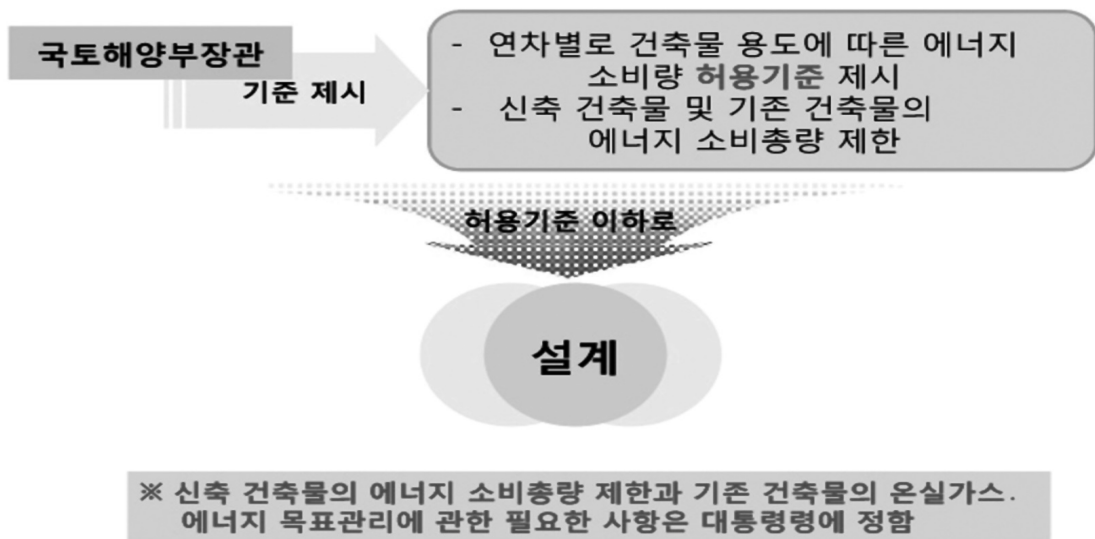
* 전기·가스·난방 등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관리



■ 성능개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관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 또한 국토해양부장은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12조), 건축주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제13조).

*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



■ 녹색건축인증

국토해양부장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장은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업무를 위임하게 된다(제16조).

한편 주택법을 근거로 한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 건축법을 근거로 한 현행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은 '녹색건축 인증'으로 일원화된다.

* 자연친화적인 건축 유도,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



■ 인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9조) 또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의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제20조)

* 인증기관에 대한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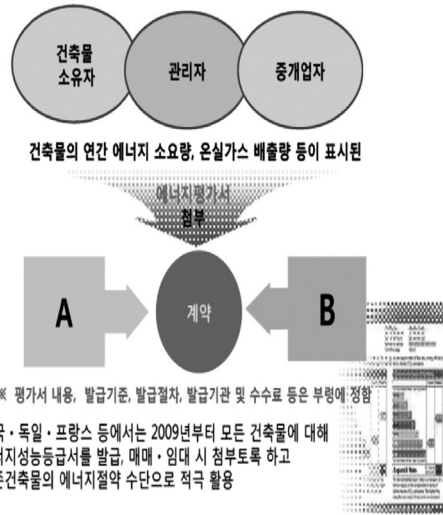
취소(의무사항)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명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인증에 대한 취소

-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제18조).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법이다.

또한 녹색건축물 육성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녹색건축물 지원 특례, 녹색건축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조성기술 연구개발 등 모든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책 및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녹색건축물의 조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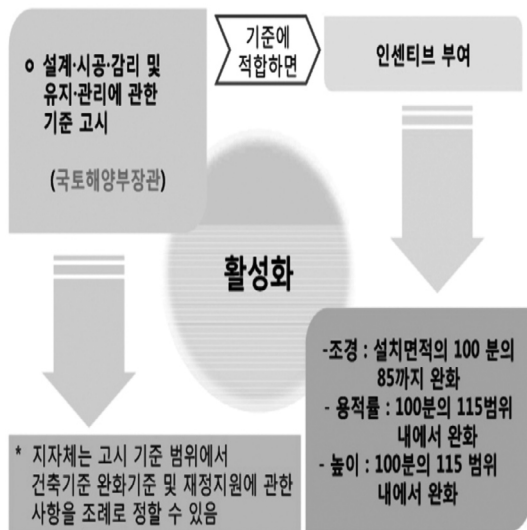
1. 녹색건축물의 건축
2. 녹색건축물의 성능 유지를 위한 건축 활동
3.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

■ 인센티브 부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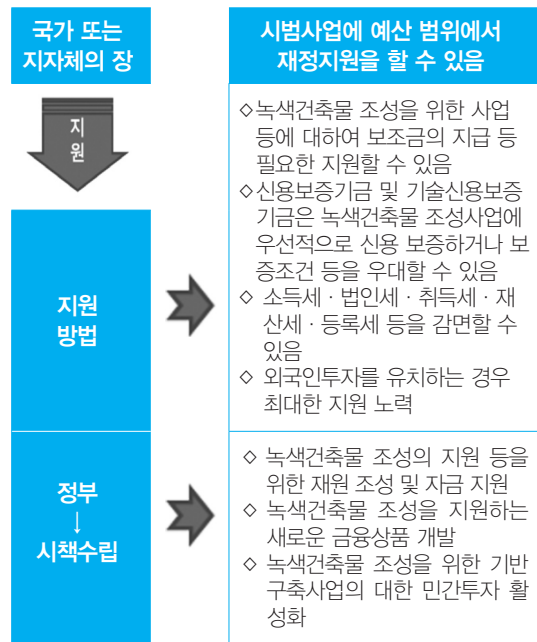
■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센터 지정 및 시범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다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① 건축허가 시 에너지소비총량 관련 근거자료
- ② 에너지평가서 첨부(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개업자) ↻